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6 선고 2021가단263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담당변호사 김표현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7. 2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서울 서대문구 C 대 23.1㎡ 중 별지 도면 표시 11, 4, 5, 6, 13, 12,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와 13, 6, 7,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에 관하여, 피고는 ‘ㄷ’ 부분 벽돌계단 3.2㎡를 철거하고 선내 ‘ㄹ’ 부분 1.1㎡ 슬레이트지붕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 토지 4.3㎡를 인도하라. 피고는 2011. 3.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6. 6. 15.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왼쪽으로 서울 서대문구 F 대지(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G + 번지’로 표시한다)와 함께 H 도로, I 도로와 접하여 있고, 오른쪽으로는 J 대지, K 대지와, 아래쪽으로는 L 대지와 접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나. 원고는 J 대 66.1㎡와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26.45㎡(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를 1993. 11. 2.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위 주택에 관해서만 2013. 8. 29. 베트남인 M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K 대 69.4㎡와 그 지상건물(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은 소외 N가 1978년경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8. 14.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주택과 맞닿아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1, 4, 5, 6, 13, 12,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2㎡와 13, 6, 7,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1㎡(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N의 매수 이전부터 피고 주택 출입을 위한 계단과 부속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N 및 피고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사용하여 왔으며,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의 이용현황도 같다.

라. 원고는 2015. 11. 20. 이 법원 2015가단38111호로 E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10. 13. 원고 주택과 함께 소외 O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여 2013. 10. 15.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7. 4. 7. 원고 승소판결이 되었고 2017. 4. 2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5.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설치된 화장실과 계단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1. 3.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원고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21. 3.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있는 화장실과 계단을 철거한 다음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21. 5. 3. 관련 1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21나46756호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21나43528호로 추완항소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22. 1. 21. 관련 1심 판결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E은 피고에게 2019. 8.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22다2193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별지